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양도/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청구 행정소송이 제기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내역
   - ○ 사 건 명 :********** 양도/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 청구
   - ○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 ○ 소 가 : **********
2. 청구취지
   - ○ 초심 판결을 '취소' 한다.
   - ○ 피고는 2013. 1. 31.자 경정 고지한 양소/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및 이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으로 2013. 1. 31.자부터 이 사건 초심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청구원인
   - ○ 원고는 2012년 대치동 소재 부동산을 동생에게 양도하고(지분60%),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2013년 삼성세무서는 위 신고를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 지방소득세 **********을 경정·고지 하였고 원고는 위법한 처분으로 소를 제기
4.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85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3조제5항
5. 응소이유
   - ○ 지방소득세의 부과는 지방세법 제85조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3조 제2항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 하는 경우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인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면 지방소득세 부과도 정당 함.

○ 따라서 삼성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을 적법하게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적법함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에 응소 하고자 함.

6. 소송수행자 : 지방세무주사 김태영, 지방세무주사보 도현수

붙임 항소장・항소이유서(2015누39134) 사본 1부. 끝.

주무관 도현수 지방소득세3팀장 김태영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전결 11/05 김용운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

시행 세무2과-38232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33 /전송 02-3423-8895 / baram21kr@gangnam.go.kr / 부분공개(4)